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안 미 자 의원)

의안 번호	24-25
----------	-------

발의년월일 : 2024. 2. .

발의자 : 안미자, 강동오, 고병준, 권영숙,
권인순, 남해석, 이상원, 차해영,
홍지광

1. 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선제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 금연구역의 범위를 확장하여 더 많은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연구역의 지정 범위 변경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금연구역의 범위 확대(안 제6조제1항제8호)

나. 기존 조례 내용 중 외래어 정비(안 제6조 제3호 및 제7호)

다. 기존 조례 내용 중 띄어쓰기 정비(안 제11조제2항)

3. 관계법령

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 조 례 안 : 불임

5. 예산조치 : 불임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2024. 2. 15. ~ 2. 21.

나. 의견제출: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7호 중 “10m”를 각각 “10미터”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제11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를 “「서울
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1.·2. (생략)</p> <p>3. 버스정류장 <u>10m</u> 이내</p> <p>4. ~ 6. (생략)</p> <p>7.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u>10m</u> 이내</p> <p>8. 「<u>유아교육법</u>」 및 「<u>영유아보육법</u>」에 따른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의 <u>경계선</u>으로부터 <u>10m</u> 이내의 구역</p> <p>9. (생략)</p> <p>② ~ ④ (생략)</p> <p>제11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p>	<p>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 -----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 <u>10미터</u> ----- --</p> <p>4. ~ 6. (현행과 같음)</p> <p>7. ----- <u>10미터</u> ----- --</p> <p>8. 「<u>초·중등교육법</u>」에 따른 <u>학교 시설</u> 및 「<u>유아교육법</u>」에 따른 유치원 시설, 「<u>영유아보육법</u>」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u>경계선</u>으로부터 <u>30미터</u>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u>통행·이용</u>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p> <p>9.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11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p>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현행과 같음)

② -----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관 계 법 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23. 12. 22.] [법률 제18606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 ⑤ 생략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30., 2023. 8. 16.>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⑦ ~ ⑨ 생략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제6조제1항제8호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 금연구역 지정(변경)에 따른 홍보 예산 확보 필요

2. 비용추계의 전제

- 관내 어린이집 181, 유치원 27, 초·중·고등학교 50, **총 258개소**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변경에 대한 홍보비 산정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세입	소계(a)	-	-	-	-	-	-
세출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7,740	-	-	-	-	7,740
	금연안내 노면표지제	28,380	-	-	-	-	28,380
	금연홍보 안내문	12,900	-	-	-	-	12,900
	소계(b)	49,020	-	-	-	-	49,020
□ 총 비용(a-b)		-49,020	-	-	-	-	-49,02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의존 재원	소계	-	-	-	-	-	-
	자체	49,020	-	-	-	-	49,020
수입	지방세수입	49,020	-	-	-	-	49,020
	세외수입 등	-	-	-	-	-	-
지방채		-	-	-	-	-	-
민간자본		-	-	-	-	-	-
기타		-	-	-	-	-	-
합계		49,020	-	-	-	-	49,020

5. 덧붙이는 의견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보건소 건강동행과 이주은
연락처	02-3153-9053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소요예산: **49,020천원**

-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10,000\text{원} \times 258 \times 3 = 7,7400,000\text{원}$
- 금연안내 노면표시제: $22,000 \times 258 \times 5 = 28,380,000\text{원}$
- 금연 홍보 안내문 : $5,000\text{원} \times 258 \times 10 = 12,900,000\text{원}$